데드맨 워킹

□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범죄자의 법익을 박탈하는 제재를 말한다. 형벌은 사회통제의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물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서 징역·금고·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 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서 자격상실·자격정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41조 각호에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형벌을 나열해놓았는데, 뒤로 갈수록 가벼운 형벌에 해당한다.

I. 사형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우리 형법은 사형 제도(현행 형법에는 내란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10여 개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인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사형제도가 존재하더라도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경우 국제사면위원회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한다.)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의 방법으로는 교수형, 총살형,참형,전기살, 가스살, 약물살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는 교수형,군인의 경우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Ⅱ. 자유형

자유형은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금고·구류의 세종류가 있다.

1.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징역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의미하고, 유기징역 기간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는 경우 50년 까지 가능하다.

2. 금고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

목차

- □ 형벌의 종류
- □ 형의 선고와 유예
- □ 전과에 대하여
- □ 사형제도의 찬반론

NOTE

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 게도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케 할 수 있다. 금고도 무기금고와 유기금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기간은 징역형과 동일하다.

3. 구류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 사이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징역·금고와 다르다.

Ⅲ. 재산형

재산형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며, 벌금·과료·몰 수의 세 종류가 있다.

1. 벌금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상한선은 없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완납하지 않는 경우 그 미납액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벌금납입은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

2. 과료

과료는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과해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다르지만, 행정벌인 과태료(過怠料)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477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고(형법 47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몰수

몰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거나 범죄로 인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예컨대 흉기),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예컨대 도박으로 딴 재물),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예컨대 장물을 매각한 대금)이다.

더 알아보기

□ 과태료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 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 정처분이다.

NOTE



IV. 자격형

자격형은 사람이 명예롭게 누릴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 하는 형벌이며, 명예형이라고도 한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1.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형벌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상실된다.

2.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사이에서 정해진다.

Ⅴ. 기타

위 형벌 이외에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일정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형의 선고와 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확정하면 국가기관은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형을 유예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교도소등이 아닌 사회 내에서 달성하고 경미한 형 집행과 결부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형의 유예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있다.

I.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하여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되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처음부터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더 알아보기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유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그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형의 선고도 있었으나단지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다.

□ 가석방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형인 경우에 20년, 유기형인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행상이양호하고 개전의 정황이 있을때 형기만료 전에 일시로 석방하고, 임시석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과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NOTE



Ⅱ.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전과에 대하여

어느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 선고'가 내려 졌다는 사실, 즉 범죄의 경력을 전과라고 한다. 이러한 전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전과기록이라 한다. 전과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I. 전과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별하고 있다.

1. 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3.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Ⅱ. 전과의 효과

벌금·구류·과료·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나 신원증명 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



나지 않는다. 수사자료표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수사나 재판과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조회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수형인명부와수형인명표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공무원의 임용자격이 제한되거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법적 불이익 외에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생활에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다.

□ 사형제도의 찬반론

I. 사형존치론

- (1)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므로, 사형의 위하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2) 피해자의 입장으로 볼 때 사형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복수의 표현이다.
- (3) 형벌은 공격적 범죄에 대한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그 본질은 응보이다. 따라서 사형은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4) 사회 구성원의 법의식이 사형을 요구할 때는 이는 적정하고 필요한 형벌이다.

Ⅱ. 사형폐지론

- (1) 사형은 복수심에 근거한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이므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2) 모든 재판에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된 경우 회복될 방법이 없다.
- (3) 사형은 위하적 효력이 미약하다.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에서 사형 폐지 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 (4)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응보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 (5) 형벌의 목적은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이며, 사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6) 사형은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중점이 있고 피해자의 구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형의 집행은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응보적(應報的) 만족을 줄 수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구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7) 범죄의 원인에는 범인의 악성(惡性)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런데 사형은 범죄의 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임지우는 형벌이다.

Ⅲ.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대법원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이라는 형벌을 우리 형법에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1963. 2. 28. 62도241; 1995. 1. 13. 94도2662 등).

- 2. 헌법재판소(헌재결 1996. 11. 28, 95헌바1)
- (1) 비례의 원칙: 사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2) 헌법에 합치되는 형벌: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 택된 것으로 지금도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현 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다.

Ⅳ. 사형의 개선

1. 사형선고와 집행의 제한

사형선고에 법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요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편, 사 형의 선고를 신중히 할 것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2. 사형범죄의 축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를 축소함으로써 그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재산범죄,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등에서 사형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의 제거를 위하여 사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을 통한 사형제의 폐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던 법무부는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를 대신 하여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그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미국 사형폐지협회장이었던 Hugo Adam Bedau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우세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